

『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김재우, 김춘남, 안장환, 이지연, 장미경,
홍난이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7월 17일

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선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
효율적 설치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(안 제4조)
-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(안 제6조)

-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~제8조)
-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(안 제10조~제12조)
- 공공조형물의 관리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같은법 시행령」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로 △예산낭비 △관리 부실 △도시미관 저해 △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 -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,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 이는 ‘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라’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지는 공공조형물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